

# 공개강좌 규정

1977. 4. 1. 제정

2017.10.23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이화여자대학교 학칙」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“공개강좌”라 함은 정규의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학술연구, 직무훈련, 기술습득, 교육증진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12월 이내의 연수활동을 말한다.  
(개정 2017.10.23.)

제3조(공개강좌의 개설)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.

1. 각 대학(원)
2. (삭 제)
3. (삭 제)
4. 부속시설 및 부설연구기관

제4조(개설승인)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공개강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강좌개시 예정일 1월 전에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(제목)
3. 강좌의 과목 및 강사의 성명
4. 강좌개설시간 및 장소
5. 수강생의 자격
6. 수강생의 선발기준
7. 학급편제 및 수강생 정원
8. 강좌이수의 사정기준
9. 수강료
10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5조(수강생의 선발) 공개강좌를 개설하는 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선발 기준에 따라 수강생을 선발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수증명)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총장이 강좌별로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이수증서를 줄 수 있다.

제7조(결과보고) 공개강좌를 마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(1977. 4. 1. 제정)

이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10. 23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